

의안번호	제 791 호
의 결 연 월 일	2018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 
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8년 3월 14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#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 
번호

791

제출연월일 : 2018년 3월 14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청주 기능지구 과학사업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위치 및 기능(안 2조, 안 4조)
  - 위치 :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
  - 기능 : 과학사업화 연구개발, 기술사업화 서비스 지원, 인력 양성 등
- 위탁운영 및 운영비(안 5조, 안 7조)
  - 위탁운영 :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 가능
    - 위탁범위 : 입주공간 지원·시설관리, 사업화 지원을 위한 컨설팅, 홍보, 마케팅,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등
  - 운영비 : 시설임대료, 수탁자부담금,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

3. 의안전문 : 불 입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 없음

5. 관계법령 발체 : 불 입

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##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(이하 “플라자”라 한다)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설치한다.
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과학벨트”란 기초연구와 비즈니스를 융합하여 종합적·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연계한 지역으로서 「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0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지역을 말한다.
2. “거점지구”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기초연구분야의 거점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·고시된 지역을 말한다.
3. “기능지구”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거점지구와 연계하여 응용연구·개발연구 및 사업화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·고시된 지역을 말한다.
4. “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”는 기능지구별 특성화 여건을 활용하여

산·학·연 공간적 통합으로 과학사업화를 이루기 위한 공간으로  
구축한 시설을 말한다.

**제4조(기능)** 플라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기초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
2. 과학벨트 기능지구의 연구기관·대학·기업에 대한 창업 및 기술  
사업화 관련 서비스 지원
3. 과학벨트 기능지구의 과학 사업화 전문인력 육성 및 홍보
4. 과학벨트 기능지구 사업 관련 행정지원 및 외부기관 편의시설 제공
5.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기능지구 활성화  
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5조(위탁운영)** ① 도지사는 플라자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  
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 
를 위탁 할 수 있다.

1. 입주공간 지원 및 시설 관리
2. 과학 사업화 지원을 위한 컨설팅, 홍보, 마케팅
3. 과학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상담
4. 그 밖에 플라자 운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
사업

② 제1항에 따른 플라자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 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, 「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,  
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를 따른다.

**제6조(수탁자의 책무)** 수탁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,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7조(운영비 지원)** ① 플라자의 운영비는 시설 임대료, 수탁자부담금,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 다만, 도지사는 플라자의 원활한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② 운영비의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8조(이용료 등의 징수)** ① 플라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설 이용료, 시설 임대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산정 및 납부방법은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플라자 관리운영규정으로 정한다. 이 경우 이용료의 구체적인 산출기준 등에 대해서는 「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과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
2. 그 밖에 행정목적 달성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

**제9조(지도·감독)** ① 도지사는 플라자의 관리·운영 상황을 수탁자

에게 보고하게 하거나,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개선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**제10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련법령 발취

### □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
제10조(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입지가 확정되면 해당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로 지정·고시하고,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고시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

### □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제11조(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·고시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를 지정·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.

1.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 목적
2. 지구의 명칭·위치 및 면적
3.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·고시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
4.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